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경상남도>

2023. 8. 22.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CONTENTS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경상남도>

- 01 1. 강재규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 09 2. 김진철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
- 17 3. 송광태 (창원대학교 교수)
- 29 4. 이흥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 33 5. 임동선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 37 6. 조용한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 45 7. 최낙범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강재규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 진솔인 견해

강재규 | 지방분권경남연대 상임대표

1. 들어가며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

나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두 가지 핵심 모순구조를 드는데, 첫째가 남북분단이고, 둘째가 수도권 집중이다.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는 남북분단 못지않은 망국적 현상이다.

2019년 12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는 동안,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인구 5,184만 9,861명으로, 이 중 50.002%인 2,592만 5,799명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분포한다. 이런 현상은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돈도 없다. 지방의 군 중에는 재정자립도가 7-8%에 불과한 경우도 많다. 인구비례로 국회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수도권 일극 편향의 국회 구성은 필연이고, 따라서 국가정책의 수도권 편향은 불문가지다.

1,000대 기업 70% 이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이 역시 점점 심화되고 있음), 경남의 경우 2010년 53개에서 2019년에는 32곳으로 감소했다.

지역구 의원 총 253명 중, 서울 49명, 인천 13명, 경기 59명으로 총 121명이어서, 약 48%가 수도권 의원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이 가속화되면 수도권 지역구 의원이 50%를 상회할 것 역시 불문가지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사로, 이를 포함하면 전체 의원 수 300명 중 56%가 수도권 출신이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법률에 의해 이뤄지므로(법치행정), 국가의 법과 제도는 수도권 이해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 나는 연방국가로의 전환에 답이 있다고 본다. 독일,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 연방국가에서는 수도권 일극 집중 문제가 우리처럼 심각하지 않다. 잠정적으로라도 국회를 양원제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을 설치하면 지역을 다소나마 대표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연방제든 국회의 양원제든 헌법의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행헌법의 체계 내에서 이러한 국가적 모순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 기준과 지역 대표성 기준을 동가치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인구 기준이 과잉 평가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선거구획정은 조정하자고(예컨대 1개 선거구를 50만 명으로 하면 과잉 대표된 수도권 등 대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안한다.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의 경우 자치구는 저마다의 지역적 특성에 큰 차이가 없을 터이기 때문이다. 농산어촌의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이나 면적 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하더라도 우리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주택, 환경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혁명적인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컨대 헌법 제76조 제1항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긴급재정명령권’ 과 같은, 아니면 그에 유사한 긴급권한을 발동해서라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수도권 집중 문제는 남북분단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발전을 옥죄는 원죄적 모순구조이기 때문이다.

2. 선거구획정에도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

선거구획정기준은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인구기준일, 인구범위, 시·도별 의석수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에는 인구기준일과 인구범위(인구비례 2:1), 자치구·시·군 일부분할 금지(예외적으로 허용) 등의 획정기준을 명시하고 있고, 시·도 관할구역 안의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획정하여야 하므로 시·도별 의석수 등도 획정기준으로 반드시 필요하나, 이 획정기준을 결정할 주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6. 3. 3.>

1.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2.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앞에서도 본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인구기준’이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서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¹⁾고 서술하고 있다.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백서」, 2020. 11, 39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한 진술인 의견 등에서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수도권 인구를 고려한 선거구 증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 등도 본인의 의견과 맥락이 같다고 본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한국공법학회 송기춘 교수(전북대)가 “다수득표제에 기초한 지역선거구제도가 기본이 되는 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의 구성에 반영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음, 인구비례성을 강화하여 수도권 지역구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임”이라는 견해, 자유한국당 측 진술인으로 참여한 정승윤 교수(부산대)가 “농산어촌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대표성 반영이 어려우므로 도시지역과 농산어촌지역을 구분하는 방안 고려”, 민주평화당측 진술인으로 참여한 안용훈 교수(대구가톨릭대)가 “일정 크기 이상의 선거구는 인구편차기준을 미적용 → 선거구간 지역불균형 완화”, 대한애국당측 진술인으로 나온 박태우(대한애국당 사무총장)의 “제20대 선거구획정은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 간 이질감과 불균형이 나타남”이라는 견해도 그러하다.²⁾

그리고 지역의견 청취를 위한 진술인들의 견해에서도 동일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즉 “지역의견은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방안보다는 제도 개선에 관한 내용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세부적으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에 지역면적도 고려하자는 의견, 광대한 농산어촌선거구 출현을 막기 위해 선거구별 지방자치단체수와 면적에 대한 상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인구비례 범위를 완화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는 내용도 마찬가지다.³⁾ 정당 의견 청취에서 나온 더불어민주당 김진영 전문위원의 “인구, 지역특성,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지역적 차이, 국가 균형발전,

2) 위 백서, 71-72쪽.

3) 위 백서, 73쪽.

지역적 대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바른미래당 김민훈 수석전문위원의 “인구수 외에 행정구역, 지세, 교통사정, 생활권 내지 역사적·전통적 일체감 등 정책적·기술적 요소도 고려, 현행 선거제도에서 인구대표성의 기계적 적용은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에 대한 정치적인 대표성의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농산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장 필요”, 민주평화당 이관승 사무총장의 “선거구획정기준 인구편차 범위(하한 13만9천명, 상한 27만8천명) 제시, 1개 선거구에 5개 이상 구·시·군의 행정구역이 포함되지 않도록 확정, 농산어촌지역 지역구 감소를 최대한 지양”, 민중당 최기영 민중정책연구원 부원장의 “농산어촌지역 대표성 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체 유지, 생태계 보전 등의 농산어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더불어 농업이 미래인 국가를 구성하는 것임, 향후 농산어촌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기 위해 의석수 증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은 불가피할 것임”⁴⁾ 등의 의견도 그러하다.

3. 지역 대표성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사례

지금 인구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해가는 지역의 현실을 응변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표 1> 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의 경우 4개의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의 경우에도 4개의 군이 1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이들이 과연 수도권 국회의원들과 맞서 지역구의 이익을 관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1> 제21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

선거구명	선거구역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4) 위 백서, 77쪽.

그런데 나의 고향인 합천군의 인구는 1964년 195,954명이었고,⁵⁾ 국회의원 선거구도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제헌국회의원선거부터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5대 국회의원선거 때까지 갑구, 을구 2명을 선출하였다.⁶⁾

그런데 2023년 7월 현재 합천군의 전체 인구는 41,635명(남 20,280명, 여 21,355명)이고,⁷⁾ 국회의원 선거구는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로 이루어져 4개군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표 2〉 2023년 7월 현재 합천군 인구

계	인구수	
	남	여
41,635	20,280	21,355

〈표 3〉 합천군 국회의원 선거구

선거구명	선거구역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이러한 문제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및 일부 대도시들을 제외한 농산어촌 지역이 공통으로 놓인 현실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모순을 극복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발전도 연목구어일 뿐이다. 선거구획정으로 이런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라도 그러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다.

5) 필자는 합천군사 '정치행정' 분야 집필 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합천군사 편찬위원회, 「합천군사 제1권(자연환경과 역사)」, 2013, 54쪽.

6) 앞의 책, 482-491쪽.

7) <https://www.hc.go.kr/04961/05655/05666.web?gcode=1282&idx=28093648&amode=view> 2023년 8월 10일 검색.

김진철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의견

김진철 | 경남시민주권연합 대외협력위원장

1. 선거 획정에 대한 현실

현재 국회의원 선거는 인구등가성 기준 2대1 이상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은 재검토 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경남 지역은 농어촌지역의 인구소멸 문제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도시의 쏠림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상에서 인구의 등가의 제한으로 인구소멸 지역은 여러 지역을 묶어서 1인을 뽑게 되어 넓은 면적의 지역구를 한사람이 대표하게 되는 문제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구획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경남지역에서는 창원, 김해, 진주, 양산처럼 인구 쏠림이 있는 도시에서는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관리 지역구내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나오게 되는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구 형성에 형평성이 없게 되는 셈이다.

2. 경남지역의 선거구 현황과 쟁점

경남은 2017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중으로 창원이나 김해, 진주신도시, 양산의 인구 쏠림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고 농어촌의 노령인구 감소와 청·장년층의 인구의 도시 이동으로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경남 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경남은 소멸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정당의 쏠림 현상이 심하고 인구 쏠림이 있는 지역은 거대양당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16개의 선거구로 나누어 선거구간의 편차가 5만명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선거구 획정으로 소멸지역민의 선택권에 많은 혼란을 초래한 것은 사실이다.

3.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 장단점

소선거구는 1명만 뽑으면 되기에 선거가 간단하지만 뽑힌 1인이 그 지역구의 유권자 표를 50% 이상 받지 못하고 당선될 경우 지역의견을 대변한다는 의미의 대표성은 약하게 되고 1등 이외의 유권자의 표는 사표가 되어 버리는 것과 소수정당이 당선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대선거구는 2명 이상을 뽑기에 선거과정이 좀 복잡한 부분과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많이 몰리는 경우 거대당의 사람들이 대거 선거에 몰려 다수당의 쏠림현상이 생길수도 있지만 유권자의 사표를 방지하여 여러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또한 인지도 높은 사람을 찍게 되는 경우에 있어 거대 정당의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게 되고 선호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출마하게 되면 사람을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당을 보고 찍게 되므로 소수정당의 표는 줄어들어 거대당의 배만 불리는 경우도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다.

4. 21대 국회의원선거의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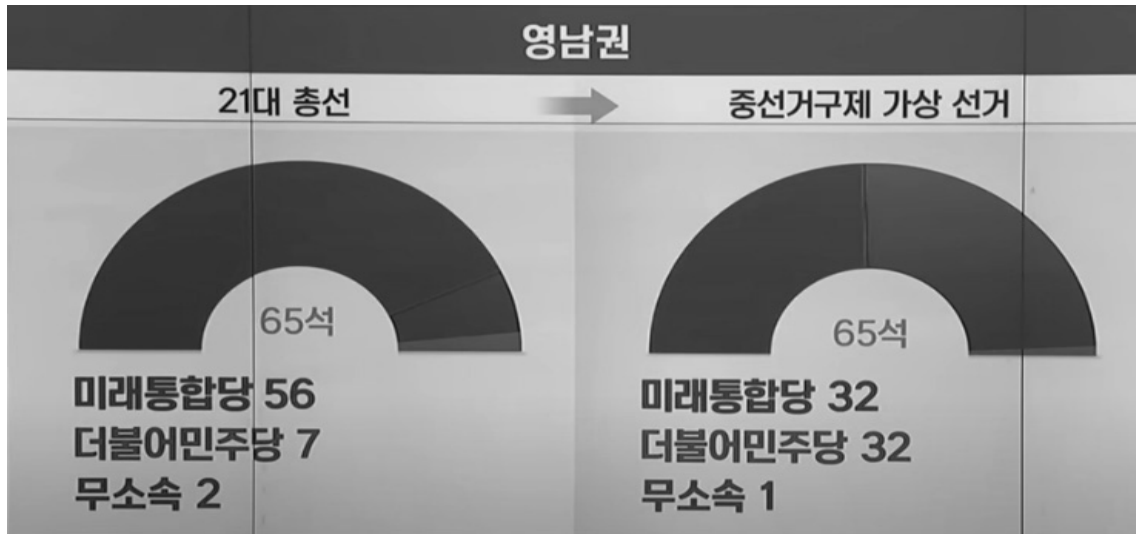
1) 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언론에서 21대 국회의원선거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로 전환한 가상 시뮬레이션 한 것을 보면. 지역구 253석에서 253석을 정하는 소선거구제에서 125곳의 지역구에서 253석을 정하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



2) 서울, 경기, 인천 지역별 현황을 보면 총 121석 중 더불어민주당 103석, 당시 미래통합당 16석 정의당 1석의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60석, 미래통합당 59석, 정의당 2석으로 고른 의석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 우리 지역 영남 지역을 보면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65석에서 미래통합당 56석, 더불어민주당 7, 무소속 2 의 결과가 나왔으나 중선거구제로 가상하면 미래통합당 32, 더불어민주당 32, 무소속 1의 가상의 결과가 나왔다.



4) 물론 이 가상 시뮬레이션은 확정된 선거 결과를 두고 시행한 것으로 결과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한 정당에 대한 의식 쏠림은 확연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다.

5. 경남 지역의 선거구획정 전환과 병행

21대 총선에서 경남지역은 16개의 선거구로 선거를 치루었고 미래통합당 12석, 더불어민주당 3석, 무소속 1석으로 확정을 짓게 되었다.

인구 쏠림이 많은 지역인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같은 경우 선거 양단체제의 선거를 치루었고 그 외 쏠림현상이 적은 소멸지역의 경우는 미래통합당이 우세하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인구쏠림 현상이 많은 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하고 상대적으로 인구쏠림이 적은 지역은 지역의 지리적, 생활적환경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재획정하여 현 소선거구제를 병행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창원의 경우 3개시의 통합으로 생활권이 동일하고 지역의 편차가 많지 않으며 진주시의 경우는 신도시개발로 공기업이 이전해 오므로 외부인구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고 김해와 양산의 경우 부산의 생활권 인구가 많은 것 등 고려할 때 중대선거구를 채택하여 다수당 체제의 선거를 치르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소멸지역은 인구수에 대한 중심이 아닌 지리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구 획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배되는 것들이 있어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현 지역구의 국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얻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소선거구제로 잃어버린 유권자의 사표를 구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강구 한다면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병행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할 것이다.

송 광 태

창원대학교 교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지역의견

송광태 | 창원대학교 교수

I. 문제의 제기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2023년 4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4조와 제24조의 2 및 제25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함.
- 「공직선거법」 제24조 제11항 및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인 2023년 3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안과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선거일 전 1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국회의원지역구를 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개혁방안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비례대표의 방법과 그 수의 확대 등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음. 그러나 본 과업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데 국한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를 결정하는 제1의 원칙은 인구수임.
- 경상남도의 경우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경우 법규정과 절차에 따라 16개 선거구를 획정하였음.
- 경상남도의 경우 인구기준일(2023. 1. 31.)로 볼 때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김해시을선거구 한 곳임. 이곳의 획정기준 불부합 내용은 인구범위 상한 초과임.
- 즉, 김해시을의 경우 인구기준일 인구수가 291,737명으로 인구 상한 기준 271,042명보다 10,695명이 초과된 상태임.

II. 선거구 획정 기준과 경상남도 불부합지역 현황

1.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인구기준(헌법재판소의 결정)

현재가 제시한 인구 비례에 따른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구분	1995년 결정	2001년 결정	2014년 결정
인구비례(최대 선거구인구:최소 선거구인구)	4대1 이하	3대1 이하	2대1 이하
인구 편차 범위	± 60%	± 50%	± 33.3%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20만명 가정	8만~32만명 (40~160%)	10만~30만명 (50~150%)	13만3333~26만6666명 (66.66~133.33%)

국회의원 선거구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			
	1995년	2001년	2014년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비례	최대·최소 인구 비례를 4대1 이하로 (인구 편차 상하 60% 이내)	최대·최소 인구 비례를 3대1 이하로 (인구 편차 상하 50% 이내)	최대·최소 인구 비례를 2대1 이하로 (인구 편차 상하 33.33% 이내)
현재 결정 이유	“평등선거의 원칙은 1인 1표 뿐만 아니라 1표의 투표 가치가 대표자 선정이라는 선거 결과에도 기여 하는 정도의 평등을 의미”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 비례가 2대1 이내가 바람직 하지만 현실을 고려해 3대1로 결정”	“선거구 조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구 비례 허용 기준을 완화할 사유가 안된다”

2.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

가. 인구기준일(제25조제1항제1호) : 2023. 1. 31.

나. 지역선거구수(제21조제1항) : 253개

※ 사도별 지역선거구수 : 「공직선거법」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참조

다. 인구범위(제25조제1항제2호, 인구비례 2:1)

○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 203,281명 기준 인구편차 상하 33⅓%

라.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제25조제1항제2호)

○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하는 자치구·시·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획정 기준 불부합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현황

시·도	정수	획정 기준 불부합 지역선거구수		
		인구범위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 금지
		상한 초과	하한 미달	
계	253	18	11	1
서울특별시	49	1	-	-
부산광역시	18	1	3	1
대구광역시	12	-	-	-
인천광역시	13	1	1	-
광주광역시	8	-	-	-
대전광역시	7	-	-	-
울산광역시	6	-	-	-
세종특별자치시	2	-	-	-
경기도	59	12	2	-
강원도	8	-	-	-
충청북도	8	-	-	-
충청남도	11	1	-	-
전라북도	10	1	3	-
전라남도	10	-	1	-
경상북도	13	-	1	-
경상남도	16	1	-	-
제주특별자치도	3	-	-	-

〈인구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 현황〉

구분	시·도	선거구	인구수 (편차)	비 고
상한 초과	서울	강동구갑	284,553 (+13,511)	○ (인구수) 강동구 460,141명(갑·을)
	부산	동래구	273,177 (+2,135)	○ (인구수) 동래구 273,177명
	인천	서구을	323,235 (+52,193)	○ (인구수) 서구 592,298명(갑·을)
	경기	수원시무	280,243 (+9,201)	○ (인구수) 수원시 1,191,620명(갑·을·병·정·무)
		평택시갑	282,563 (+11,521)	○ (인구수) 평택시 580,011명(갑·을)
		평택시을	297,448 (+26,406)	
		고양시을	312,152 (+41,110)	○ (인구수) 고양시 1,077,599명(갑·을·병·정)
		고양시정	271,512 (+470)	
		시흥시갑	286,940 (+15,898)	○ (인구수) 시흥시 513,468명(갑·을)
		하남시	326,496 (+55,454)	○ (인구수) 하남시 326,496명
		용인시을	271,326 (+284)	○ (인구수) 용인시 1,074,650명(갑·을·병·정)
		용인시병	289,443 (+18,401)	
		파주시갑	321,755 (+50,713)	○ (인구수) 파주시 495,480명(갑·을)
		화성시을	351,194 (+80,152)	○ (인구수) 화성시 914,500명(갑·을·병)
		화성시병	302,178 (+31,136)	
		충남	천안시을	289,393 (+18,351)
	전북	전주시병	287,348 (+16,306)	○ (인구수) 전주시 650,596명(갑·을·병)
	경남	김해시을	281,737 (+10,695)	○ (인구수) 김해시 534,935명(갑·을)

4. 경상남도 국회의원 선거구(지역구 : 16)와 김해시을 선거구



<http://gyeongnampeoplepowerparty.kr/>

■ 공직선거법 [별표 1] <개정 2020. 3. 1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지역구 : 253)

경상남도(지역구 : 16)	
창원시의창구선거구	창원시 의창구 일원
창원시성산구선거구	창원시 성산구 일원
창원시마산합포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원
창원시마산회원구 선거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
창원시진해구선거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

경상남도(지역구 : 16)	
진주시갑선거구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관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진주시을선거구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통영시고성군선거구	통영시 일원, 고성군 일원
사천시남해군하동군선거구	사천시 일원, 남해군 일원, 하동군 일원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선거구	밀양시 일원, 의령군 일원, 함안군 일원, 창녕군 일원
거제시선거구	거제시 일원
양산시갑선거구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양산시을선거구	동면,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선거구	산청군 일원, 함양군 일원, 거창군 일원, 합천군 일원

5. 김해시갑·을 선거구의 현황과 인구

김해시갑선거구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김해시을선거구	주촌면, 진례면, 회현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경남	김해시갑	253,198	○ (인구수) 김해시 534,935명(갑·을)
	김해시을	281,737 (+10,695)	

- 하한인구수 : 135,521명
- 상한인구수 : 271,042명
- ※ 평균인구수(전국인구수÷지역선거구수) 203,281명 기준 인구편차 상하 33½%

<https://www.gimhae.go.kr/00954/01020/01060.web>



<김해시 월별 인구현황표>

2023년 ▼ 1월 ▼ 검색

구분	세대수	인구(명)										
		총 인구			한국인			외국인			전월대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증감	증감률(%)
김해시	228,661	553,175	283,655	269,520	534,935	270,566	264,369	18,240	13,089	5,151	135	0.02
진영읍	24,141	57,860	30,136	27,724	55,151	28,374	26,777	2,709	1,762	947	-9	-0.02
주촌면	7,540	20,494	11,095	9,399	19,017	9,747	9,270	1,477	1,348	129	73	0.36
진례면	3,429	7,749	4,835	2,914	6,110	3,361	2,749	1,639	1,474	165	19	0.25
한림면	3,990	9,000	5,703	3,297	6,992	3,820	3,172	2,008	1,883	125	43	0.48
생림면	2,179	4,485	2,730	1,755	3,669	1,957	1,712	816	773	43	32	0.72
상동면	1,699	3,928	2,523	1,405	3,093	1,716	1,377	835	807	28	0	0.00
대동면	2,942	5,519	2,876	2,643	5,436	2,818	2,618	83	58	25	-26	-0.47
등상동	4,677	10,098	5,242	4,856	9,291	4,765	4,526	807	477	330	-40	-0.39
회현동	4,251	9,095	4,584	4,511	8,669	4,325	4,344	426	259	167	-15	-0.16
부원동	4,840	9,970	5,138	4,832	9,448	4,834	4,614	522	304	218	-41	-0.41
내외동	32,228	74,305	37,108	37,197	72,749	36,296	36,453	1,556	812	744	-15	-0.02
북부동	32,632	83,748	41,894	41,854	82,497	41,256	41,241	1,251	638	613	109	0.13
칠산서부동	4,459	9,344	4,974	4,370	9,231	4,913	4,318	113	61	52	-13	-0.14
활천동	17,486	39,938	20,501	19,437	38,840	19,813	19,027	1,098	688	410	32	0.08
삼안동	15,278	32,987	17,079	15,908	31,624	16,229	15,395	1,363	850	513	-121	-0.37
불암동	3,024	7,282	3,747	3,535	7,157	3,660	3,497	125	87	38	-27	-0.37
장유1동	21,856	56,733	28,403	28,330	55,887	27,823	28,064	846	580	266	-47	-0.08
장유2동	14,554	36,211	18,264	17,947	35,930	18,140	17,790	281	124	157	-9	-0.02
장유3동	27,456	74,429	36,823	37,606	74,144	36,719	37,425	285	104	181	190	0.26

※ 월별 인구통계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외국인 등록인구 집계완료 시점인 익월 10일 이후 업데이트 되며, 최근 외국인정보공통이 용시스템 정비로 인해 업데이트시기가 늦어질 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https://www.gimhae.go.kr/00954/01020/01060.web?year=2023&month=1>

Ⅲ. 경상남도 김해시을선거구 확정 대안 제시

1. 원칙

- 1) 경남의 현재 국회의원선거구 16개 준수
- 2) 인구기준 상·하한 준수
- 3) 게리멘더링 유의
- 4)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 현지 지역 사정 고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 5) 현재의 읍면동 유지

2. 대안 제시

- 1) 현재 김해시을선거구에 포함되어 있는 진례면(7749명)과 회현동(9,095명)을 김해시 갑선거구로 변경
- 2) 회현동의 경우 21대 총선까지는 김해시갑선거구였기 때문에 원칙 4)에 상당히 부응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3) 진례면의 경우 면적은 넓으나 인구가 많지 않은 특징을 가지며, 진영읍과 원칙 4)에서 동질성이 큼.
- 4) 제시한 대안에 따를 경우 김해시갑선거구의 인구는 270,042명이 되고, 김해시을선거구의 인구는 264,893명이 되어 양 선거구 모두 인구 상한 기준이 준수됨.

이 흥 석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의견서

이흥석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수석부위원장

경상남도는 2017년을 정점으로 인구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진주시, 양산시, 김해시의 경우 소폭 인구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이러한 인구변화가 선거구획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선거구획정만으로 주권자의 표 증가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으로 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

1. 의견제안(1안) - 1개 선거구 신설 (경남16개->17개)

1) 창원시 성산구, 의창구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원동과 용지동, 신월동을 성산구로 편입

2) 김해갑/을---갑/을/병(1안)

김해시을의 경우 장유신도시와 주촌선천지구 등의 대단위 택지 개발로 인해서 정체 중인 김해시 중에서도 소폭이나마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총선의 인구 상하한선이 21대와 같다는 가정하에 김해시 인구가 54만 7천 명으로 55만에 근접하기에 3개 선거구로 확대 (경남 17개 선거구)

김해의 경우는

갑/장유 지역

김해 을/ 원도심 및 북부동&동부 동 지역+대동면

김해 병/ 내외동·칠산서부동+나머지 읍·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3) 진주시 갑/을 조정

진주시는 혁신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분구가 가능한 상황이다. 갑 선거구에서 성북동(10,786명)을 떼어 을 선거구로 옮기는 정도의 소규모 조정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의견제안(2안)-선거구 신설없이 조정(경남16개 유지)

- 1) 밀양시를 김해로 편입해 김해갑/을/병 3개 선거구 편제
- 2) 의령군을 진주시 선거구로 편입
- 3) 함안군을 창원시 선거구로 편입
- 4) 창녕군을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선거구로 편입. (끝)

임 동 선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의견

임동선 | 정의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1. 선거제도개혁 방향

- 지난 3월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하는 3가지 개편안을 통과 시켰음. 모두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음.
- 현행 공직선거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의원정수는 총300명. 그러나 300명의 의원정수로는 오늘날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국회의 기능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숫자. 1987년 이후 고정된 의원정수는 오늘날의 급증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회의 대처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킴.
- 선거제도는 각 정당이 자신들만의 정치적 색깔과 정체성으로 무장하여 자신들만의 차별화된 정책과 강령을 통해 유권자로부터 표를 얻고 그 획득한 표만큼 의석을 차지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이를 구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이러한 이념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음. 그 원인은 이들 제도가 선거제도의 소기의 목적달성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
- 결국 진정한 비례대표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정당에 대한 선거인의 지지도에 상응하는 의석배분을 핵심으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어야 함. 이럴 때 비로소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및 평등선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고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음.

- 이를 통해 인물위주의 다수대표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정책중심의 정당정치와 소수정당과 소수세력의 의회진출을 가능케 하고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의회에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

2. 선거제도 개혁의 목표

-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거대 양당 중심의 극단적 대결정치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팽배함.
- 이러한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지향하는 목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 즉 대표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함.
- 또한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정책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제도화시키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3. 제안

- 국회가 매번 공직선거법과 선거구획정을 위한 전제조건 등에 대한 늦장 대응으로 국민의 기본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이 매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결정하는 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음.
- 이 독립적인 기구에는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손을 떼고 의석을 가진 정당은 의석규모와 상관없이 1인의 위원을 참석시키고, 과반수 이상을 중립적인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도록 함.
- 그리고 이 기구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가 의무적으로 추인하도록 규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임.

조 용 한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조용한 | 진보당 경남도당 사무처장

1. 들어가며

「공직선거법」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① 국회의원지역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해당 국회의원선거에 적용되는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이 확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⑩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게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

⑪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선거일 1년전인 2023년 4월 10일까지 확정하여야 하지만, 올해도 그 시기는 넘겨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32일이 남은 현재에도 확정하지 못하며, 의견 청취를 하고 있는 상황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의 공정한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해서 의견 청취와 지역실사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나, 현재 선거구획정안 제출 기한을 4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여전히 선거제도와 지역별 의원정수가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선거구획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

- 이에 따라 입법기관인 국회는 자신의 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고, 법을 준수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도록 노력할 것

2. 현황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지역 선거구 현황>

선거구	관할구역
창원시 의창구	창원시 의창구 전 지역
창원시 성산구	창원시 성산구 전 지역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 마산합포구 전 지역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전 지역
창원시 진해구	창원시 진해구 전 지역
진주시 갑	진주시 천전동, 성북동, 평거동, 신안동, 이현동, 판문동, 가호동, 충무공동,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 명석면, 대평면, 수곡면
진주시 을	진주시 중앙동, 상봉동, 상대동, 하대동, 상평동, 초장동, 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대곡면, 금산면, 집현면, 미천면
통영시·고성군	통영시 전 지역, 고성군 전 지역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사천시 전 지역, 남해군 전 지역, 하동군 전 지역
김해시 갑	김해시 동상동, 부원동, 북부동, 활천동, 삼안동, 불암동, 진영읍, 한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
김해시 을	김해시 회현동, 내외동, 장유1동, 장유2동, 장유3동, 칠산서부동, 주촌면, 진례면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밀양시 전 지역, 의령군 전 지역, 함안군 전 지역, 창녕군 전 지역
거제시	거제시 전 지역
양산시 갑	양산시 중앙동, 삼성동, 강서동, 물금읍, 원동면, 상북면, 하북면
양산시 을	양산시 양주동, 서창동, 소주동, 평산동, 덕계동, 동면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산청군 전 지역, 함양군 전 지역, 거창군 전 지역, 합천군 전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별 주민등록 인구증감〉

선거구	21대 총선 당시 인구	2023년 1월말 인구	증감
창원시 의창구	262,106명	215,770명	△ 46,336명
창원시 성산구	218,454명	248,280명	29,826명
창원시 마산합포구	176,036명	179,282명	3,246명
창원시 마산회원구	193,467명	183,365명	△ 10,102명
창원시 진해구	192,763명	193,896명	1,133명
진주시 갑	194,522명	200,302명	5780명
진주시 을	153,030명	143,185명	△ 9,845명
통영시·고성군	182,518명	172,826명	△ 9,692명
사천시·남해군 하동군	200,990명	193,269명	△ 7,721명
김해시 갑	262,177명	253,198명	△ 8,979명
김해시 을	280,521명	281,737명	1,216명
밀양시·의령군 함안군·창녕군	259,591명	248,441명	△ 11,150명
거제시	247,592명	236,301명	△ 11,291명
양산시 갑	187,024명	184,981명	△ 2,043명
양산시 을	164,633명	168,797명	4,164명
산청군·함양군 거창군·합천군	181,490명	174,042명	△ 7,448명

- 하한선 : 135,521명
- 2분할(상한선) : 271,042명
- 3분할 : 542,084명
- 4분할 : 813,126명
- 5분할 : 1,084,168명

3. 의견

1) 김해지역

① 의견

- 김해시을 선거구를 2개로 분구하며, 일부동을 조정하여 총3개의 선거구로 함.

② 배경

(1) 김해시을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인구수 상한 지역으로 분류된 선거구

- 김해시을 인구수(2023.1.31.기준)는 281,737명으로 국회의원 선출 상한인구수 271,042명 보다 10,695명이 많음.

-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지역 선거구 획정 기준일인 2023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김해시을’ 선거구를 인구 범위 상한 초과 선거구 현황으로 분류했음.

- 김해시을 선거구의 대표적 지역인 장유는 2026년 2월까지 약 1만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는 등 인구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2) 김해시 인구, 지리, 생활, 문화 특성 고려

- 김해는 인구, 지리, 생활,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장유 △내외,주촌 △진영 △북부 △동김해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장유 △내외, 주촌, 진영 △북부, 동김해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③ 인구수 구분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1월 기준)

- 장유1,2,3동, 칠산서부 : 175,192명

- 한림, 생림, 상동, 대동, 동상, 부원, 북부, 활천, 삼안, 불암 : 198,317명

- 내외, 진영, 주촌, 진례, 회현 : 161,426명

2) 진주지역

① 의견

- 진주시 ‘갑’ 선거구의 성북동과 이현동을 진주시 ‘을’ 선거구로 조정

② 배경

(1) 생활, 문화적 환경고려

- 성북동과 이현동은 ‘을’ 지역구의 중앙동과 상봉동과 함께 구도심으로서 생활 문화적으로 더 밀접하며, 역사적으로 진주성 내 지역으로서도 ‘을’ 선거구와 문화적인 근접성이 있음

(2) 인구수 구분

	현행	변경시
진주시 갑	200,302명	190,283명
진주시 을	143,185명	153,204명

4. 제언

- 선거구제도 확정 없이 선거구획정만으로 선거구의 지역 대표성과 생활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의석수와 선거제도를 개혁하거나 대거 변경하지 않을 경우 선거구획정으로 인한 긍정 효과는 높지 않음.
- 특히 경남의 경우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농촌지역의 넓은면적과 도심지의 인구 밀도를 양쪽을 고려해 의석수의 확대와 비례대표제의 확대가 이뤄졌을 때 지역 대표성 확보에 대한 효과가 높아질 것임.

최 낙 범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제22대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관한 의견서

최낙범 | 경남대학교 명예교수

1.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 현황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경상남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인구증감 현황

선거구별	2023년01월 인구수	21대 국회의원 선거인구수 2020.4.15	비교 증감	하한인구수:135,521명 상한인구수:271,042명 평균인구수:203,281명 평균인구수 대비율(%)
경상남도	3,277,672	3,356,914	-79,242	
창원시 의창구	215,770	262,106	-46,336	106.1%
창원시 성산구	248,280	218,454	+29,826	122.1%
창원시 마산합포구	179,282	176,036	+3,246	88.2%
창원시 마산회원구	183,365	193,467	-10,102	90.2%
창원시 진해구	193,896	192,763	+1,133	95.4%
진주시	343,487	347,552	-4,065	
진주시갑	200,302	194,522	+5,780	98.5%
진주시을	143,185	153,030	-9,845	70.4%
통영시고성군	172,826	182,518	-9,692	85.0%
통영시	122,511	130,548	-8,037	
고성군	50,315	51,970	-1,655	
사천시남해군하동군	193,269	200,990	-7,721	95.1%
사천시	109,357	111,573	-2,216	
남해군	41,505	43,418	-1,913	
하동군	42,407	45,999	-3,592	
김해시	534,935	542,698	-7,763	
김해시갑	253,198	262,177	-8,979	124.6%
김해시을	281,737	280,521	+1,216	138.6%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48,441	259,591	-11,150	122.2%

선거구별	2023년01월 인구수	21대 국회의원 선거인구수 2020.4.15	비교 증감	하한인구수:135,521명 상한인구수:271,042명 평균인구수:203,281명 평균인구수 대비율(%)
밀양시	102,817	105,355	-2,538	
의령군	25,978	27,080	-1,102	
함안군	61,361	65,153	-3,792	
창녕군	58,285	62,003	-3,718	
거제시	236,301	247,592	-11,291	116.2%
양산시	353,778	351,657	+2,121	
양산시갑	184,981	187,024	-2,043	91.0%
양산시을	168,797	164,633	+4,164	83.0%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174,042	181,490	-7,448	85.6%
산청군	34,093	35,285	-1,192	
함양군	37,585	39,436	-1,851	
거창군	60,266	61,902	-1,636	
합천군	42,098	44,867	-2,769	

제21대 경상남도 국회의원의 선거구별 인구와 2023년 1월 현재 인구를 비교하면, 경상남도 전체 인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79,242명이 감소한 3,277,672명이다.

인구가 증가한 국회의원선거구는 창원시 성산구(29,826명), 창원시 마산합포구(3,246명), 창원시 진해구(1,133명), 진주시갑(5,780명), 김해시을(1,216명), 양산시을(4,164명) 등으로 16개 선거구 가운데 6개 선거구이다.

나머지 10개 선거구는 인구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보다 감소했다. 가장 많이 인구가 감소한 선거구는 창원시 의창구로 46,336명이 감소했다. 1만 명 이상 감소한 선거구는 창원시 마산회원구(10,102명),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11,150명), 거제시(11,291명)이다.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별로 다소 인구 증감이 있었지만, 김해시을 선거구를 제외하면 모든 선거구는 하한인구수와 상한인구수 범위 안에 있다. 선거구별로 평균인구수 대비율을 보면 100%를 넘는 선거구는 창원시의창구(106.1%), 창원시 성산구(122.1%), 김해시갑(124.6%), 김해시을(138.6%),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122.2%), 거제시(116.2%)이다.

김해시을의 경우는 상한인구수 133.3%(271,042명)를 넘는 138.6%(281,737명)으로 상한인구수 확정기준보다 5.3%(10,695명) 많아 확정기준 불부합선거구에 해당한다.

평균인구수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진주시을이 70.4%(143,185명)로 가장 적다. 나머지 9개 선거구는 80~90%대에 속한다.

인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진주시을)와 가장 많은 선거구(김해시을) 인구 차이는 138,552명으로 평균인구수의 68.2%이다.

2.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 문제

1) 김해시을 선거구는 국회의원선거구 확정기준 상한인구수 271,042명보다 10,695명이 많아 불부합 선거구에 해당한다. 김해시을 선거구 인구수 (281,737명)는 평균인구수 대비 138.6%로 상한인구수 133.3%보다 5.3% 많다.

2)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 16개 가운데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고려여건 가운데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지역이다. 특히 교통, 생활문화권이 상이한 지역을 한 선거구로 확정함으로써 주민형성과 주민통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3) 대도시 국회의원선거구는 확정기준 인구수를 고려해서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나누고 있는데 인구변동으로 선거구간 인구수 차이가 벌어져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창원시 5개 행정구를 선거구로 하는 선거구와 진주시 갑과 을선거구, 김해시 갑과 을선거구, 양산시 갑과 을선거구 인구 변동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3.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 과제와 해결방안

1)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 문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해시을선거구는 획정기준 상한인구수를 초과하는 획정기준 불부합 선거구이다. 해결방안은 불부합 선거구이지만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다른 방법은 김해시을선거구 지역과 김해시갑선거구 지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어느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2)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 문제에서 거론한 선거구 획정기준 고려 사항, 특히 교통·생활문화권 불일치 지역 문제는 경상남도 국회의원선거구 전체 문제와 맞물려 있어 특정 지역만의 해결방안을 찾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하나의 대도시지역 자치단체에 2개 이상 국회의원선거구를 두는 경우 선거구간 인구 차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별도의 장을 통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현행 획정기준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 차이가 135,521명이라는 것도 대표성 문제를 안고 있다.

이상의 과제들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며, 현행 소선거구 제도가 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선거구 내지 대선선거구 제도에 관한 접근이 필요하다.

4. 경상남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획정에 관한 의견

현재 경상남도 16개 국회의원선거구 인구수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비교했을 때 선거구별로 다소 인구증감이 있지만, 김해시을 선거구가 상한 인구수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하면 15개 선거구는 하한인구수 135,521명과 상한인구수 271,042명의 범위 안에 있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구와 동일하게 획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8개월도 남아있지 않는 시점에서 선거구를 늘린다거나 줄인다거나 선거구를 변경한다거나 선거구간 인구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 지역을 조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라 할 것이다.